

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일자 2010. 11.

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교육경비 지원 확대로 수준높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경비보조금 기준액을 전전년도 일반회계 시세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40을 10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토록 하였음

2.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3조제1항 중 “40” 을 “50” 으로 한다

3. 참고사항

-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
- 「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」

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1항 중 “40” 을 “50” 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3조(보조금의 기준액의 범위)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교육경비 보조금을 시세 (세외 수입제외) 수입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	제3조(보조금의 기준액의 범위) ① 40	제3조(보조금의 기준액의 범위) ① 50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	② (개정안과 같음)

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회계년도”를 “회계연도”로 하고, “30”을 “50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3호의 “경상북도교육위원”을 “경상북도의회교육의원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4호의 “구미시교육청 학무과장”을 “구미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의거”를 “따라”로, “별지 제1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1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본문 중 “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5조제2항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어느하나”를 “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보조사업의 변경·취소) ① 각급학교의 장은 사정으로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.

제9조 중 “「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보조금교부신청서			
명 칭		대 표 자	
소 재 지			
사 업 명			
보조사업의 목적			
보조사업의 소요경비			
총사업비	시비보조	자체부담	기 타
보조사업의 기간			
사업계획			
「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 구미시장 귀하			
구비서류 : 사업계획서 1부			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 g/m²(재활용품)]